

체험형 청년인턴 인재영입 결격사유 (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6조의1 제2항)

제6조의1 (고용자격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수 없다.

1.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
2. 제13조의 고용금지 질병에 걸린 자
 - * 전염병,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뚜렷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
3.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, 공사 「인사규정」제8조 (결격사유)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*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 - *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*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4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
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